

수원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나86426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19나8642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단50680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용현

피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변론종결 2021. 5. 28.

판결선고 2021. 7. 1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2019가단50680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3.8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준현, 판사 김정운, 판사 김재학